

# 예산총칙

200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62,309,019	7,869,271
일반회계	231,504,644	6,945,139
일반회계	231,504,644	6,945,139
기타특별회계	30,804,375	924,131
상수도사업	2,455,509	73,665
하수도사업	1,010,058	30,302
수질개선	5,796,806	173,904
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	398,140	11,944
의료급여기금	532,072	15,962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515,500	15,465
기반시설	340,500	10,215
소득특화사업	5,302,265	159,068
농공단지조성사업	3,078,622	92,359
공영개발사업	2,061,791	61,854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9,313,112	279,393

제 2 조 세입 ·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 사업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03,532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인건비    ○ 업무추진비    ○ 복리후생비